

(앞 쪽)

- 업소명:
- 소재지:
- 대표자:

오염 물질명	배출농도 (mg/L)	할 당 오염부 하량(kg/일)	지 정 배 출량(L/ 일)	일일유량 (L/일)	지역별 부 과 계 수	배 출기 간(일)	오염총량초과과징금부 과에 따른 위반횟수

○시료 채취일: ○개선 완료일: (개선기간 중 휴무일: 일)

가. 오염물질 1kg당 연도별 부과단가 ----- 원(A)

나. 초과오염배출량(일일초과오염배출량 × 배출기간)----- kg(B)

일일초과오염배출량 ----- kg

※ 일일오염배출량이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하는 경우: $(\text{일일유량} \times \text{배출농도} \times 10^{-6} - \text{할당 오염부하량})$ 값과 $[(\text{일일유량} - \text{지정배출량}) \times \text{배출농도} \times 10^{-6}]$ 값 중 큰 값

다. 초과율별 부과계수 ----- (C)

라. 지역별 부과계수 ----- (D)

마.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----- (E)

바. 감 액 ----- (F)

사. 오염총량초과과징금 = (A) × (B) × (C) × (D) × (E) - (F) ----- 원

가산금: 오염총량초과과징금 × 5/100 ----- 원

납기 후 부과금: 오염총량초과과징금 + 가산금 ----- 원

작성자: _____ (서명 또는 인)

위 바 항의 "감액"이란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또는 과징금 중 같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